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91

발의연월일: 2025. 1. 9.

발 의 자:김소희·김위상·조경태

김상훈 · 김예지 · 안상훈

김성원 • 박덕흠 • 유용원

성일종 · 서범수 · 김장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후대응기금과 같이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부재하고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등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 또한, 기금 사업의 성과달성 현황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곤란한 실정임.

이에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및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제85조의6제1항후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5조의6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5조의6(성과목표관리를 위한	제85조의6(성과목표관리를 위한
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	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
작성)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	작성) ①
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	
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	
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・성	
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	
및 성과보고서(「국가회계법」	
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	
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작	
성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
	<u>이 경우 기금의</u>
	실제 사업 수행이 여러 기관에
	분산되어 있는 경우 기금관리
	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바에 따라 통합 성과계획서 및
	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